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제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선문

전화 064-729-4422 / 팩스 0502-193-8359

보도자료

2023. 1. 16.(월)

제목 「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청부살인 사건」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제주지검 형사1부(부장검사 강세현)는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(검사 6명, 수사관 7명)을 구성하여, '22. 12. 16. 발생한 「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청부살인 사건」을 심층 수사한 결과, 관련 범죄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을 오늘(1. 16.) 구속 기소함
- 검찰은, 초동 단계부터 제주동부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였고,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다수 관련자 조사, 현장검증, 디지털포렌식, 금융거래 분석, 재산관계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추가 범죄혐의를 밝혀 내어 전모를 규명함

[경찰 송치 : 강도살인]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여, 피고인 A○○는 식당 운영권을 획득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, 피고인 B○○, C○○는 식당 지점 영업권과 금원 및 채무 해결 이익(약 2억 6천만원 상당)을 얻기로 공모한 후, 피고인 A○○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 B○○, C○○가 피해자를 추적하던 중 '22. 12. 16.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 B○○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 차례 가격하여 살인

[송치 후 검찰 추가인지 : 특경법위반(사기), 공문서부정행사]

[특경법위반(사기)] 피고인 A○○은 '21. 1.~10.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종종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4,500만원 편취

[공문서부정행사] 피고인 B○○, C○○는 '22. 11. 29. ~ 12. 16. 3회 선박승선권 발권시 행적 은폐 목적으로 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

- 향후,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'죄에 상응하는 처벌'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

I

사건 개요

○ 피고인 : A○○(남, 55세, 피해자 식당의 前 관리이사) - 살인 지시자

B○○(남, 50세) - 살인 행위자

C○○(여, 45세, B○○의 처) - 살인 조력자

○ 피해자 : D○○(여, 55세, 제주 유명 E식당 운영자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A○○는 '22. 12. 경 피고인 B○○, 피고인 C○○에게 살해 대가로 E식당 지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하고, 피고인 B○○는 '22. 12. 16.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C○○로부터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며 기다리다가,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아령(1kg)으로 20여 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후 현금 491만 원 및 명품가방(시가 합계 1,800만 원 상당) 등을 가져가고, 피고인 A○○는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8억 4,500만 원 채무 면탈 [강도살인]

- 피고인 A○○는 '21. 1. 13. 경~'21. 10. 14. 경 종종 총회 결의 내지 권한 없이 F종중 소유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4,500만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

- 피고인 B○○, C○○은 '22. 11. 29.~'22. 12. 16. 3회에 걸쳐 선박승선권 발권시 행적 은폐를 위해 지인 G○○의 주민등록증 제시 [공문서부정행사]

II

수사 경과

○ '22. 12. 19. 제주동부경찰서, A○○, B○○, C○○ 체포

○ '22. 12. 21. A○○, B○○, C○○ 구속

○ '22. 12. 28. 사건 송치 : 송치 죄명 - 강도살인

- ~ '23. 1. 13. 관련자 조사, 현장검증, 휴대전화 포렌식, 계좌거래내역, 보유 재산 권리관계 분석 등 검찰 보강수사
 [A○○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B○○, C○○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검찰 추가 인지]
- '22. 1. 16. 피고인들 3명 구속 기소

Ⅲ 수사 결과

① 범행 동기

- 피고인 A○○는 E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피해자로부터 관계 단절과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, 피해자를 살해하여 E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○○, C○○에게 피해자 살해를 지시함
 - ※ 피고인 A○○는 '20. 3.경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E식당 본점 토지·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하여, 피해자 사망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E식당 본점 토지·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속자인 피해자의 자녀들을 압박하여 식당 운영권을 장악할 의도였음
- 피고인 B○○, C○○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, 피고인 A○○로부터 범행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,200만 원을 수수하고, 피해자 사망 후 E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 3,000만 원 해결 등의 제안을 받고 범행함

② 범행 계획 및 실행

-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 전 '22. 9. 중순경부터 12.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등 살인 방식을 6차례에 걸쳐 모의한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음
-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시정장치 비밀번호 확인을 위한 '몰래카메라'를 구입·설치하고, G○○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박승선권을 구입하였으며,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하였음

- 살해 행위를 직접 실행한 피고인 B○○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아령(1kg)으로 피해자의 머리, 안면, 등 부위를 20여 차례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살해한 후, 현금 491만 원, 귀금속, 명품가방 3점(시가 합계 1,800만 원 상당) 등을 가지고 도주하였음

③ 추가 범행 사실 규명

- 검찰은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계좌거래내역, 사건 관계인 보유 재산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, ①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의도한 재산적 이익, ②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 A○○가 피해자로부터 채무 3억 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, F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피해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단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5억 4,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(범행 동기 중 하나), ③ 피고인 B○○, C○○이 G○○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도주한 행적 등을 추가로 규명하였음

④ 범죄수의 박탈

- 피고인 B○○, C○○이 피고인 A○○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 수수한 범죄수익금 3,200만 원의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였음

IV

향후 계획

- 제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들에게 '죄에 상응하는 처벌'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☑